

2021. 6. 18.(금) 10:00

**제28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4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전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6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출사유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34조 제1항(결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5. 세입세출 결산규모

1) 총 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 인 잔 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156,205	1,180,563	981,977	198,586	74,982	24,167	11,806	13,181	74,450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1,147,005	1,194,592	1,171,543	1,600	21,450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1,002,100	144,905	1,147,005	980,527	110,842	13,094	42,542

3) 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타특별회계	9,200	9,021	9,020	0	1

나.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기타특별회계	9,200	9,200	1,450	113	64	7,573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계	442	110,955	‘상리근린공원조성’ 등 441건
일 반 회 계	명 시 이 월	276	74,925	
	사 고 이 월	158	24,111	
	계 속 비 이 월	6	11,806	
특 별 회 계	명 시 이 월	1	57	
	사 고 이 월	1	56	

6. 기금의 결산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 성 액
		조성액	사용액	
계	48,069	49,347	2,152	95,26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300	47,088	0	83,388
식품진흥기금	134	52	34	153
자활기금	841	40	40	841
재난관리기금	9,629	1,852	1,778	9,703
옥외광고발전기금	400	302	300	402
체육진흥기금	764	12	0	777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발생액	해당연도 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계	4,051	166	274	3,943
일반회계	3,840	136	274	3,702
특별회계	1	0	0	1
기 금	210	30	0	240

2) 채 무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계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2,062,607	169,222	73,897	2,157,932
행 정 재 산	2,047,893	169,129	68,005	2,149,016
일 반 재 산	14,714	93	5,891	8,916

4) 물 품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전년도말현재액		증 감 내 역				해당연도말현재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838	10,500	125	2,010	60	500	903	12,010

8. 금고의 결산

1) 총수입 및 지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잔 액 (금고보관액)
계	1,180,563	981,977	198,586
일 반 회 계	1,171,543	980,527	191,015
기타특별회계	9,020	1,450	7,571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지출액	
계	2,411	-1,129	15,797	16,926	1,282

II. 검토의견

-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1,805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3억원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3.2%인 9,82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86억원입니다.
- 이 중 명시이월비는 750억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41억원, 계속비는 118억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45억원입니다.
- 세입은 전년대비 884억원 증가하여 8.1%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763억원 증가하여 21.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아 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월금액도 그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 2020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은 952억원으로 전년 481억원 대비 98.2%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은 3조 4,751억원으로 전년도 3조 3,717억원보다 1,03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성과지표수 174개 중 118개를 달성하여 달성률 67.8%이며, 이는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에 비해 7.2%감소하였습니다.
- 2020회계연도말 채권은 39억원이고, 채무액은 0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953억원 증가한 2조 1,579억원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증인의 건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6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출사유

- 2020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증인을 받고자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4항(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예비비)

5.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집행 현황

1) 회계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561,461	1,300,033	0	261,428
일반회계	1,001,461	740,033	0	261,428
특별회계	560,000	560,000	0	0

2)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관 련 서	예 비 비 배 정 과 목		지 출 정 일	지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적 요
	편 성 목	통 계 목						
합 계				1,561,461,000	1,300,033,450	0	261,427,550	
화 원 읍	소 계			64,322,000	64,279,810	0	42,190	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20. 3.9.	54,322,000	54,282,810	0	39,190	
	재료비	206-01		10,000,000	9,997,000	0	3,000	
논 공 읍	소 계			12,862,000	12,278,220	0	583,780	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20. 3.9.	10,862,000	10,307,640	0	554,360	
	재료비	206-01		2,000,000	1,970,580	0	29,420	
다 사 읍	소 계			64,322,000	55,917,020	0	8,404,980	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20. 3.9.	54,322,000	48,187,530	0	6,134,470	
	재료비	206-01		10,000,000	7,729,490	0	2,270,510	
유 가 읍	소 계			21,297,000	12,170,260	0	9,126,740	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20. 3.9.	16,297,000	12,170,260	0	4,126,740	
	재료비	206-01		5,000,000	0	0	5,000,000	
옥 포 읍	소 계			32,161,000	32,160,370	0	630	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20. 3.9.	27,161,000	27,161,000	0	0	
	재료비	206-01		5,000,000	4,999,370	0	630	

관 련 서	예 비 비 배 정 과 목		지 출 결정일	지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적 요
	편 성 목	통 계 목						
현 품 읍	소 계			21,297,000	14,190,010	0	7,106,99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20. 3.9.	16,297,000	9,364,090	0	6,932,910	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
	재료비	206-01		5,000,000	4,825,920	0	174,080	
가 창 면	소 계			21,297,000	19,628,830	0	1,668,17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20. 3.9.	16,297,000	15,968,720	0	328,280	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
	재료비	206-01		5,000,000	3,660,110	0	1,339,890	
하 빈 면	소 계			12,762,000	6,144,870	0	6,617,13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20. 3.9.	10,762,000	6,144,870	0	4,617,130	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
	재료비	206-01		2,000,000	0	0	2,000,000	
구 지 면	소 계			12,760,000	11,047,070	0	1,712,93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20. 3.9.	10,760,000	10,008,150	0	751,850	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
	재료비	206-01		2,000,000	1,038,920	0	961,080	
농 업 정 책 과	소 계			4,781,000	4,781,000	0	0	
	민간인재 해당 및 복구 보상금	302-02	2020. 7.8.	4,781,000	4,781,000	0	0	이상저온(냉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지원
안 전 방 재 과	소 계			671,200,000	657,287,000	0	13,913,000	
	시설비	401-01	2020. 8.14.	560,000,000	560,000,000	0	0	'20.8.8.~8.10. 집중호우 관련피해복구비(치수사업)
	민간인재 해당 및 복구 보상금	302-02	2020. 8.31.	44,000,000	36,050,000	0	7,950,000	'20.7.28.~8.11.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시설비	401-01	2020. 8.31.	67,200,000	61,237,000	0	5,963,000	'20.7.28.~8.11.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관 련 서	예 비 비 배 정 과 목		지 출 정 일	지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적 요
	편 성 목	통 계 목						
일 자 리 경 제 과	소 계			19,100,000	16,412,000	0	2,688,000	
	시 설 비	401-01	2020. 8.31.	19,100,000	16,412,000	0	2,688,000	'20.7.28.~8.11.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공 원 녹 지 과	소 계			161,000,000	134,261,000	0	26,739,000	
	시 설 비	401-01	2020. 8.31.	161,000,000	134,261,000	0	26,739,000	'20.7.28.~8.11.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희 망 지 원 과	소 계			7,300,000	7,267,100	0	32,900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자체재원)	402-01	2020. 8.31.	7,300,000	7,267,100	0	32,900	'20.7.28.~8.11.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건 설 과	소 계			145,300,000	4,276,000	0	141,024,000	
	시 설 비	401-01	2020. 8.31.	145,300,000	4,276,000	0	141,024,000	'20.7.28.~8.11.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도 시 정 비 과	소 계			186,500,000	144,732,890	0	41,767,110	
	시 설 비	401-01	2020. 8.31.	5,800,000	5,800,000	0	0	'20.7.28.~8.11.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시 설 비	401-01	2020. 8.31.	180,700,000	138,932,890	0	41,767,110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문 화 체 육 과	소 계			20,000,000	20,000,000	0	0	
	공 사·공 단 자본전출금	404-01	2020. 8.31.	20,000,000	20,000,000	0	0	'20.7.28.~8.11.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관 광 과	소 계			83,200,000	83,200,000	0	0	
	공 사·공 단 경상전출금	309-01	2020. 8.31.	57,410,000	57,410,000	0	0	'20.7.28.~8.11.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공 사·공 단 자본전출금	404-01	2020. 8.31.	25,790,000	25,790,000	0	0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Ⅱ. 검토의견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5억 6천만원이며, 그 중 13억원을 집행하고 2억6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10억, 지출액 7억4천만원, 불용액 2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결정액 5억6천만원, 지출액 5억 6천만원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확산에 대응하는 방역소독비와 이상기온에 따른 집중호우관련 피해복구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되고, 사용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6월 1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김정태 의원, 도일용 의원

3. 제안사유

- 달성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 달성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지원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안 제4조)으로 청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의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보기 쉬운 크기로 설치하여 먼 거리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그 공공시설에서 공공행사 등을 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인에게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수허가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기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직접 제작하는 영상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6월 1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김보경 의원

3. 제안사유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도심 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6조)

5.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도심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6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조건은 달성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전기자전거 구입시 30만원 이내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는 타구입보조금 지급 교통수단(전기차, 수소차, 이륜자동차)과의 종합적인 비교·검토와 전기자전거 보급 및 자전거도로 현황조사, 군민대상 구매계획(의향) 설문조사, 타자치단체 운영사례 수집 및 보완 등을 통한 종합적인 도입방안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시행시기는 2022년 이후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담당부서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행의 시기는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조와 성능 등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16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u> 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조와 성능 등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이 정한 안전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u>제16조 (생략)</u>	<u>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u>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6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개정사유

○ 다사읍 및 구지면 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리 분리·신설과
이장정수 및 반 수의 증가

-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563세대, 14개반) : '21. 8. 예정

-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881세대, 11개반) : '21. 7. 예정

-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704세대, 9개반) : '21. 8. 예정

○ 다사읍 죽곡12리, 옥포읍 강림2리, 구지면 창5리, 응암6,7리, 화산2리의
조례상 표기 정정

4.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3개리 34개반 신설(319리 ⇨ 322리, 2,738반 ⇨ 2,772반)

읍·면	기 존		개 정		증감		비 고
	행 정 리	반 수	행 정 리	반 수	리	반	
다 사 읍	< 신 설 >		매 곡 2 0 리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4	1	14	
구 지 면	< 신 설 >		창 6 리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1	1	11	
	< 신 설 >		창 7 리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9	1	9	
옥 포 읍	강 립 2 리	9	강 립 2 리	9	-	-	반 표기 오류 정정 (10반 → 9반)

- 다사읍 죽곡12리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상 표기 정정
(현행) 죽곡청아람5단지 아파트 → (정정) 대실역 태왕아너스
- 구지면 창5리, 응암6,7리, 화산2리의 동호 표기를 동별 최저호수-
최고호수별 표기가 아닌 동별 실호수 표기 방법으로 정정
〈예시〉 (현행) 102동 201호~2302호
→ (정정) 102동 201호~2302호, 203호~2304호

○ 이장 정수 : 증 3(다사읍 : 매곡20리, 구지면 : 창6리, 창7리)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다사읍 및 구지면 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리 분리·신설과
이장정수 및 반 수의 증가, 다사읍 죽곡12리, 옥포읍 강림2리, 구지면
창5리, 응암6,7리, 화산2리의 조례상 표기 정정

○ 주요 내용으로는

- 리·반 조정 : 3개리 34개반 신설(319리 ⇨ 322리, 2,738반 ⇨ 2,772반)
- 이장 정수 : 증 3(다사읍 : 매곡20리, 구지면 : 창6리, 창7리)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사읍과 구지면의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조례와 상이한 반, 공동주택 동/호 표기를 실제와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위치도 및 상위·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다사읍란 및 다사읍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매곡리	20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산리	1	문산리
다사읍 소계	11	61	61

별표2 중 구지면란 및 구지면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구지면	창 리	7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창5리 창6리 창7리
	응암리	7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응암6리 응암7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1	내리
	화산리	2	화산1리 화산2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34	34

별표3의 다사읍란 중 매곡19리란 다음에 매곡20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	반	구 역
매곡20리	제 1 반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1동 201호~ 2102호
	2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1동 203호~ 2204호
	3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2동 201호~ 2002호
	4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2동 203호~ 2004호
	5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2동 205호~ 1906호
	6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3동 201호~ 1802호
	7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3동 203호~ 1804호
	8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3동 205호~ 1806호
	9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4동 201호~ 2502호
	10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4동 203호~ 2504호
	11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5동 201호~ 1902호
	12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5동 203호~ 1904호

리	반	구역
	13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오피스텔) 201동 201호~ 709호
	14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오피스텔) 201동 801호~ 1209호

별표3의 다사읍란 중 죽곡12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리	반	구역
죽곡12리	제 1 반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1동 101호~2001호, 202호~2002호
	2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1동 103호~2003호, 105호~2005호
	3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2동 101호~1701호, 102호~1702호
	4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2동 103호~2003호, 205호~2005호
	5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2동 106호~2006호, 107호~2007호
	6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3동 101호~1701호, 102호~1702호
	7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3동 103호~2003호, 205호~2005호
	8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3동 106호~2006호, 107호~2007호
	9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4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4동 203호~2003호, 205호~2005호
	11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4동 106호~1506호, 107호~1507호
	12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5동 201호~2001호, 202호~2002호
	13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5동 203호~2003호, 205호~2005호
	14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5동 206호~2006호, 107호~2007호
	15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6동 101호~1801호, 102호~1802호
	16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6동 203호~2003호, 105호~2005호
	17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6동 106호~2006호, 107호~2007호
	18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7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9	죽곡리 814번지(대실역태왕아너스) 107동 203호~2003호, 105호~2005호, 106~2006호

별표3의 옥포읍란 중 강림2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리	반	구역
강림2리	제 1 반	247~259
	2	262~296
	3	338~358

리	반	구역
	4	330~341
	5	312~336
	6	235~302
	7	535~557
	8	535-4~557
	9	243~248, 565~569

별표3의 구지면란 중 창5리란 다음에 창6리란 및 창7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	반	구역
창6리	제 1 반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1동 101호~1701호, 102호~1802호, 103호~1803호
	2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2동 201호~1902호
	3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3동 101호~2003호, 104호~1904호
	4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4동 101호~2503호, 104호~2004호
	5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5동 101호~2503호, 104호~2004호
	6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6동 201호~1801호, 102호~1902호, 103호~1903호, 104호~1094호
	7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7동 101호~1704호
	8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8동 101호~2004호
	9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9동 101호~2504호
	10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10동 101호~2504호
	11	창리 1434번지(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11동 101호~2504호
창7리	제 1 반	창리 1447번지(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1동 101호~2504호
	2	창리 1447번지(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2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3	창리 1447번지(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3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리	반	구역
	4	창리 1447번지(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4동 101호~1202호
	5	창리 1447번지(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5동 101호~2002호
	6	창리 1447번지(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6동 101호~2202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7	창리 1447번지(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7동 101호~2504호
	8	창리 1447번지(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8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9	창리 1447번지(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9동 101호~2502호

별표3의 구지면란 중 창5리란, 응암6리란 및 7리란, 화산2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리	반	구역
창5리	제 1 반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1동 201호~2401호, 102호~2403호, 104호~2204호
	2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2동 101호~2504호
	3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3동 201호~2401호, 102호~2503호, 104호~2504호
	4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4동 101호~2504호
	5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5동 101호~2201호, 202호~2502호
	6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6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104호~2304호
	7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7동 101호~2004호
	8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8동 101호~2202호
	9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9동 201호~2501호, 102호~2502호, 103호~2304호
	10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0동 101호~1904호
	11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1동 201호~1701호, 102호~1602호, 103호~1804호
	12	창리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2동 101호~1802호

리	반	구역
응암6리	제 1 반	응암리 1252(국가산단쭈파크) 101동 201호~2504호
	2	응암리 1252(국가산단쭈파크) 102동 201호~2302호, 203호~2304호
	3	응암리 1252(국가산단쭈파크) 103동 201호~2502호, 203호~2304호
	4	응암리 1252(국가산단쭈파크) 104동 201호~2504호
	5	응암리 1252(국가산단쭈파크) 105동 201호~2404호
	6	응암리 1252(국가산단쭈파크) 106동 201호~2502호
	7	응암리 1252(국가산단쭈파크) 107동 201호~2304호
응암7리	제 1 반	응암리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1동 201호~2501호, 102호~2502호, 203호~2504호
	2	응암리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2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3	응암리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3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4	응암리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4동 201호~2404호
	5	응암리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5동 201호~2402호
	6	응암리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6동 101호~2404호
화산2리	제 1 반	응암리 1105(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1동 201호~2501호, 102호~2504호
	2	응암리 1105(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1동 201호~2302호, 203호~2204호
	3	응암리 1105(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3동 201호~2402호, 203호~2304호
	4	응암리 1105(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4동 101호~2504호
	5	응암리 1105(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5동 101호~2504호
	6	응암리 1105(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6동 101호~2504호
	7	응암리 1105(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7동 101호~2504호
	8	응암리 1105(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8동 101호~2504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박곡리	1	박곡리		박곡리	1	박곡리
	방천리	1	방천리		방천리	1	방천리
	서재리	13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서재리	13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세천리	7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세천리	7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12리 죽곡13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12리 죽곡13리
	매곡리	19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리	20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부곡리	1	부곡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산리	1	문산리		문산리	1	문산리
다사읍 소계	11	60	60	다사읍 소계	11	61	61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구지면	창 리	5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창5리	구지면	창 리	7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창5리 창6리 창7리
	응암리	7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응암6리 응암7리		응암리	7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응암6리 응암7리
	고봉리	1	고봉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1	내1리		내 리	1	내리
	화산리	2	화산1리 화산2리		화산리	2	화산1리 화산2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32	32	구지면 소계	15	34	34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신설〉			다사읍	매곡20리	제1반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1동 201호~ 2102호
						2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1동 203호~ 2204호
						3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2동 201호~ 2002호
						4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2동 203호~ 2004호
						5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2동 205호~ 1906호
						6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3동 201호~ 1802호
						7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3동 203호~ 1804호
						8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3동 205호~ 1806호
						9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4동 201호~ 2502호
						10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4동 203호~ 2504호
						11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5동 201호~ 1902호
						12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5동 203호~ 1904호
						13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오피스텔) 201동 201호~ 709호
						14	매곡리 574번지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오피스텔) 201동 801호~ 1209호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다사읍	죽곡12리	제1반	814(죽곡청아람5단지)501동 101~2001, 202~2002	다사읍	죽곡12리	제1반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1동 101~2001, 202~2002
		2	814(죽곡청아람5단지)501동 103~2003, 105~2005			2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1동 103~2003, 105~2005
		3	814(죽곡청아람5단지)502동 101~1701, 102~1702			3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2동 101~1701, 102~1702
		4	814(죽곡청아람5단지)502동 103~2003, 205~2005			4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2동 103~2003, 205~2005
		5	814(죽곡청아람5단지)502동 106~2006, 107~2007			5	814(죽곡청아람5단지)102동 106~2006, 107~2007
		6	814(죽곡청아람5단지)503동 101~1701, 102~1702			6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3동 101~1701, 102~1702
		7	814(죽곡청아람5단지)503동 103~2003, 205~2005			7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3동 103~2003, 205~2005
		8	814(죽곡청아람5단지)503동 106~2006, 107~2007			8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3동 106~2006, 107~2007
		9	814(죽곡청아람5단지)504동 101~2001, 102~2002			9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4동 101~2001, 102~2002
		10	814(죽곡청아람5단지)504동 203~2003, 205~2005			10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4동 203~2003, 205~2005
		11	814(죽곡청아람5단지)504동 106~1506, 107~1507			11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4동 106~1506, 107~1507
		12	814(죽곡청아람5단지)505동 201~2001, 202~2002			12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5동 201~2001, 202~2002
		13	814(죽곡청아람5단지)505동 203~2003, 205~2005			13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5동 203~2003, 205~2005
		14	814(죽곡청아람5단지)505동 206~2006, 107~2007			14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5동 206~2006, 107~2007
		15	814(죽곡청아람5단지)506동 101~1801, 102~1802			15	814(죽곡청아람5단지)106동 101~1801, 102~1802
		16	814(죽곡청아람5단지)506동 203~2003, 105~2005			16	814(죽곡청아람5단지)106동 203~2003, 105~2005
		17	814(죽곡청아람5단지)506동 106~2006, 107~2007			17	814(죽곡청아람5단지)106동 106~2006, 107~2007
		18	814(죽곡청아람5단지)507동 101~2001, 102~2002			18	814(죽곡청아람5단지)107동 101~2001, 102~2002
		19	814(죽곡청아람5단지)507동 203~2003, 105~2005, 106~2006			19	814(대실역태왕아너스)107동 203~2003, 105~2005, 106~2006

현행				개정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읍	강림2리	제1반	247~259	옥포읍	강림2리	제1반	247~259
		2	262~296			2	262~296
		3	338~358			3	338~358
		4	330~341			4	330~341
		5	312~336			5	312~336
		6	235~302			6	235~302
		7	535~557			7	535~557
		8	535-4~557			8	535-4~557
		10	243~248, 565~569			9	243~248, 565~569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구지면	〈신설〉			구지면	창6리	제1반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1동 102호~2403호
						2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2동 101호~2504호
						3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3동 102호~2504호
						4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4동 101호~2504호
						5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5동 101호~2502호
						6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6동 102호~2503호
						7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7동 101호~2004호
						8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8동 101호~2202호
						9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09동 102호~2502호
						10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10동 101호~1904호
						11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11동 102호~1804호
						12	1434번지 (국가산단대방디에트르) 112동 101호~1802호

현행				개정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구지면	〈산설〉			구지면	창7리	제1반	1447번 지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1동 101호~2504호
						2	1447번 지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2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3	1447번 지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3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4	1447번 지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4동 101호~1202호
						5	1447번 지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5동 101호~2002호
						6	1447번 지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6동 101호~2202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7	1447번 지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7동 101호~2504호
						8	1447번 지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8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9	1447번 지 (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309동 101호~2502호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구지면	창5리	제1반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1동 102호~2403호	구지면	창5리	제1반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1동 201호~2401호, 102호~2403호, 104호~2204호
		2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2동 101호~2504호			2	(좌동)
		3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3동 102호~2504호			3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3동 201호~2401호, 102호~2503호, 104호~2504호
		4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4동 101호~2504호			4	(좌동)
		5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5동 101호~2502호			5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5동 101호~2201호, 202호~2502호
		6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6동 102호~2503호			6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6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104호~2304호
		7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7동 101호~2004호			7	(좌동)
		8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8동 101호~2202호			8	(좌동)
		9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9동 102호~2502호			9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9동 201호~2501호, 102호~2502호, 103호~2304호
		10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0동 101호~1904호			10	(좌동)
		11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1동 102호~1804호			11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1동 201호~1701호, 102호~1602호, 103호~1804호
		12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2동 101호~1802호			12	(좌동)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구지면	응암6리	제1반	1252(국가산단쭈파크) 101동 201호~2504호	구지면	응암6리	제1반	(좌동)
		2	1252(국가산단쭈파크) 102동 201호~2302호			2	1252(국가산단쭈파크) 102동 201호~2302호, 203호~2304호
		3	1252(국가산단쭈파크) 103동 201호~2502호			3	1252(국가산단쭈파크) 103동 201호~2502호, 203호~2304호
		4	1252(국가산단쭈파크) 104동 201호~2504호			4	(좌동)
		5	1252(국가산단쭈파크) 105동 201호~2404호			5	(좌동)
		6	1252(국가산단쭈파크) 106동 201호~2502호			6	(좌동)
		7	1252(국가산단쭈파크) 107동 201호~2304호			7	(좌동)
	응암7리	제1반	1251(국가산단반도유보 라아이비파크2.0) 201동 102호~2504호		구지면	제1반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1동 201호~2501호, 102호~2502호, 203호~2504호
		2	1251(국가산단반도유보 라아이비파크2.0) 202동 102호~2504호			2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2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3	1251(국가산단반도유보 라아이비파크2.0) 203동 102호~2504호			3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3동 201호~2501호, 102호~2503호, 204호~2504호
		4	1251(국가산단반도유보 라아이비파크2.0) 204동 201호~2404호			4	(좌동)
		5	1251(국가산단반도유보 라아이비파크2.0) 205동 201호~2402호			5	(좌동)
		6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6동 101호~2404호			6	(좌동)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구지면	화산2리	제1반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1동 102호~2504호	구지면	화산2리	제1반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1동 201호~2501호, 102호~2504호
		2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2동 201호~2302호			2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2동 201호~2302호, 203호~2204호
		3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3동 201호~2402호			3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3동 201호~2402호, 203호~2304호
		4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4동 101호~2504호			4	(좌동)
		5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5동 101호~2504호			5	(좌동)
		6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6동 101호~2504호			6	(좌동)
		7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7동 101호~2504호			7	(좌동)
		8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8동 101호~2504호			8	(좌동)

참고 1 관할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 다사읍 매곡20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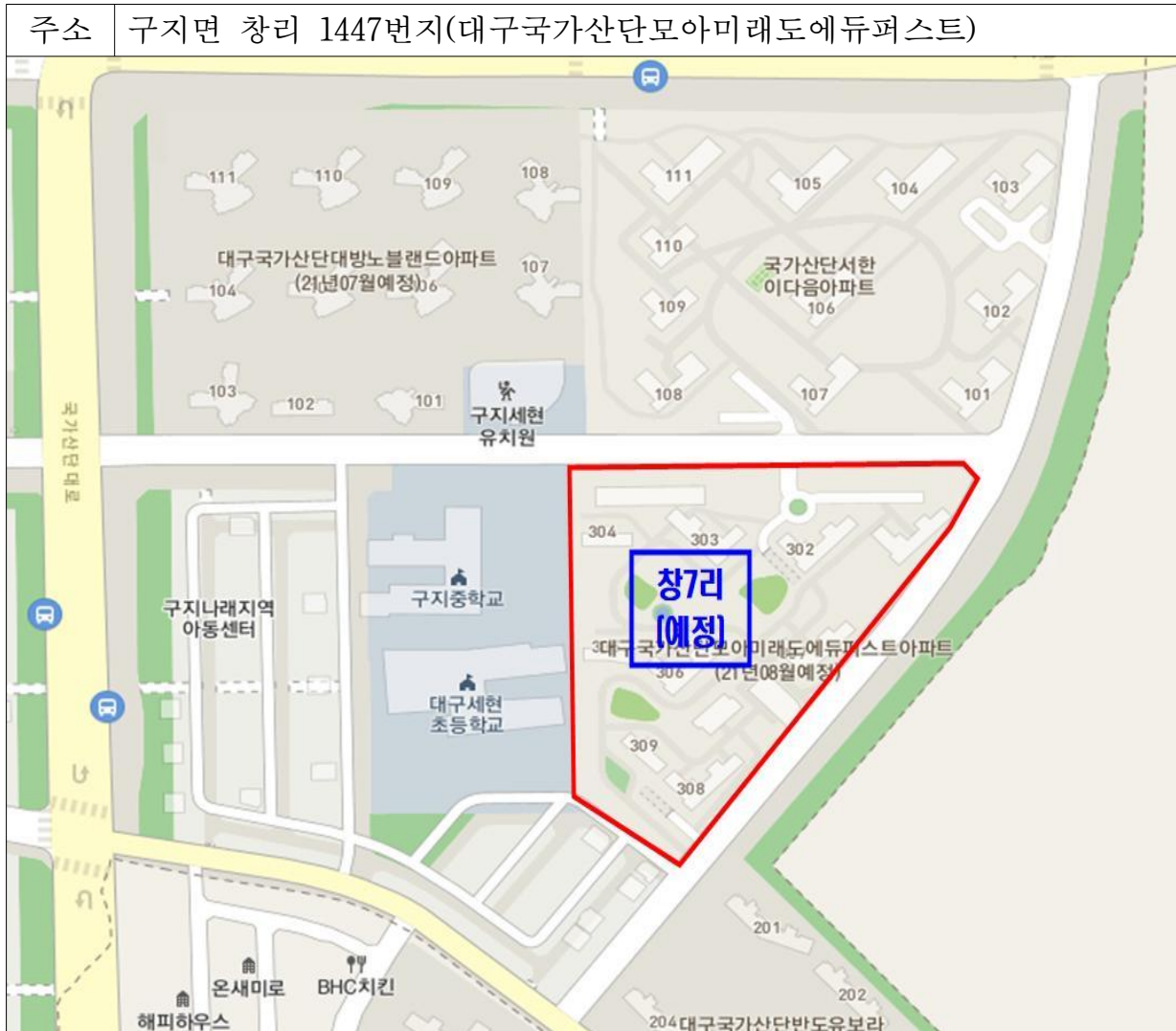
주소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74번지(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 구지면 창6,7리

주소 달성군 구지면 창리 1434번지(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





참고 2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6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개정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년 친화적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경감을 통해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계법령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32조)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4조, 제35조)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생략 항목 추가(안 제5조)
-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 불명확한 내용 삭제 및 상위 주요법령 추가(안 제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의 정의 규정(안 제28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정의 규정(안 제30조, 제66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신설조문 제13조의2 반영(안 제32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법률명 변경(안 제32조)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2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
- 안 제34조, 제35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납부방법 개선
-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생략 항목 추가
- 안 제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66조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 코로나19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자와 청년친화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대부 제한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군유재산관리처분”을 “군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8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대부재산관리 운영”을 “재산 관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수입을 배분할”을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에서”를 “군이”로 한다.

제25조의2 제목 중 “대부”를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9조제1항제12호”를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로 하며, “대부”를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34조의 제목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3회”를 “4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4회”를 “6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시가”를 “균이”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일 이후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u>군유재산관리처분에</u>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u>군유재산 관리 및 처분</u> -----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1. ~ 3. (생략) 4. <u>일반재산의 용도변경</u> 5. (생략) 6.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신 설></u> <u>기존 제6호에서 이동</u> ② (생략) 1. ~ 4.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u> 7. <u>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u> 8.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
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7. (생략)

③ (생략)

1. ~ 5. (생략)

<신 설>

④ (생략)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
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
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생략)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
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
는 용도폐지

제8조(실태조사) ① -----
----- 따라 -----

----- 재산 관리
및 운영-----.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생략)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
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

⑥ -----

----- 군이 -----
-----.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1. ~ 3. (생략)

④ ~ ⑤ (생략)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산정하며, 기타 토석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② ~ ⑤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1.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
----- 그 밖에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

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영 제30조제3항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 설>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1. ~ 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④ ~ ⑤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 3. (생략)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3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

-----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② (생략)

1. (생략)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
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
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생략)

1. ~ 5.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
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4회

3. ----- 6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군이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20. (생략)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 18. (생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 21.~ 24. (생략)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 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of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한 경우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 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6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개정사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 기간과 재심의 항목 신설(안 제10조)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6)

5.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1년 6월 10일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 기간과 재심의 항목 신설에 관한 사항
- 안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옥외광고사업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⑤ (생략) ⑥ (신설) ⑦ (신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법조문</th><th>적용기준</th><th>과태료</th></tr><tr><td>1. (생략)</td><td></td><td></td><td></td></tr><tr><td>1의2 (신설)</td><td></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생략)				1의2 (신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법조문</th><th>적용기준</th><th>과태료</th></tr><tr><td>1.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r><tr><td>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20조 제1항 제1의3</td><td>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td><td>(좌동)</td></tr><tr><td>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td><td></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좌동)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생략)																													
1의2 (신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좌동)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천 원씩 더한 금액	(좌동)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좌동)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적 용 기 준	과 태 료
(신 설)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 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좌동)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좌동)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좌동)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5.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u>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u> <u>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u> <u>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u> <u>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u>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